

경상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

업 무 협 약 서

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, SK(주) C&C, 한국사회혁신금융(주)은 경상북도 사회적금융 및 ESG 분야 지원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, SK(주) C&C, 한국사회혁신금융(주)이 보유하고 있는 정책 지원 수단, 지식·정보 및 자원 등을 활용한 상호 협력을 통해 다음 각 호를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1.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
2. 지역민의 ESG 실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문제 개선

제2조(협력분야) “협약기관”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자원 지원
2. 사회가치 실현 및 홍보를 위한 자료 제공
3.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

제3조(협약의 실행) 상기 제2조 각 호의 세부 실행 절차는 “협약기관” 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① 본 협약의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제반 거래정보와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,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협약 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에 불구하고 관계 법령 등에 의해 정보의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, 해지, 해제된 경우에도 계속 유지된다.

제5조(신의성실 원칙) “협약기관”은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
제6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본 협약의 내용은 “협약기관”의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제7조(협약서의 효력, 변경)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어느 일방으로부터 갱신에 대한 서면 통보가 있으면 상호 합의 하에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협약기관은 필요 시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.

③ 이 협약의 변경은 협약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하며, 변경의 효력은 그 서류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제8조(협약의 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“협약기관”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의에 따르기로 한다.

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 후 각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5월 30일



센터장 원 희 철
센터장을 대리하여
팀장 이 주 현

이 주 현



사장 윤 풍 영
사장을 대리하여
ESG 팀장 장종섭

장종섭



대표이사 이 상 진

이 상 진